

#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7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5월 25일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과 불일치한 조문을 개정하여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의 취지에 부합시키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정의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수사·변호·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의 범위에서 제외함 (안 제2조제1항제2호 단서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
2) 입법예고('21. 4. 1.~4. 21.)결과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수사·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“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”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,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. &lt;단서 신설&gt;</p> <p>3.·4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2조(정의) ①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----- . 다만, 수사·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.</p> <p>3.·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상·하위 법령간 통일성 확보를 위해 개정요청을 받고 상위법과 같이 단서조항을 추가하려는 개정이므로 수반되는 비용은 없음

4. 작성자

-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 박종배(02-2133-6380)